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1·6·8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7·5 조례 제1247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20·10·7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24·9·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무형 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4·9·3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개정 2020·10·7, 2024·9·30>
 [전문개정 2014·10·15]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10·7, 2024·9·30>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9·30]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9·30>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5, 2024·7·1>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4·10·15, 2024·9·30>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0·10·7, 2024·

9·3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1, 2024·9·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⑳ 까지 생략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2016·7·5 조례 제1247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4·9·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